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44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신동욱 · 강대식 · 박상웅
박준태 · 권성동 · 추경호
서지영 · 송언석 · 조정훈
유상범 · 광규택 · 김재섭
나경원 · 조배숙 · 김도읍
구자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의3의 제목 중 “會社の 株式取得”을 “회사의 주식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會社가”를 “회사가”로, “會社の 發行株式總數의 10분의 1을”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로, “會社에”를 “회사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보유 다른 회사 주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3 초과 10분의 1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보유사실을 그 다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 이내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100분의 3 이하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42條의3(다른 <u>會社의 株式取得</u>) <u>會社가</u> 다른 <u>會社의 發行 株式總數의 10分の 1을</u>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u>會社에</u> 대하여 <u>지체없이</u>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2조의3(다른 <u>회사의 주식취득</u>) <u>회사가</u> ----- <u>회사의 발행</u> <u>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u> ----- ----- <u>회</u> <u>사에</u> ----- <u>지체 없이</u> ----- -----.